

특 정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영양) —

2026. 5.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가과, 나과
내 용	

영양군 가과, 나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추진 현황 “생략”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처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착공 전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양군 가과에서 추진중인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의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0○○. ○○. ○○.일 흠박이 공종의 조건부 적정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통보 받고도 1년이 지난 20○○. ○○. ○○.일이 되어서야 안전관리계획서를 최종 보완하여 적정의견으로 조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적정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또한, 같은 부서의 “☆☆☆☆ 지방상수도 증설사업 ‘의 경우는 국토안전원으로부터 20○○. ○○. ○○.일에 조건부 적정 의견의 보완통보를 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 2건이 안전관리계획이 온전하게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

2. 안전관리비 반영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상세 항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 주변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산정한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사업부서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시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별도 작성하고 조정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가과, 나과에서는 ‘☆☆☆☆ 지방상수도 증설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 교통 신호수 비용 등)를 아래 [표 2]와 같이 별도 항목이 아닌 순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발주하여 안전관리비 반영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 안전관리비 반영 부적정 현황 “생략”

그 결과 위 공사 2건의 안전관리비 일부에 대한 정산 권리 상실과 안전관리 목적 외 사용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영양군 건축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다과
내 용	

영양군 다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건축공사 추진 현황 “생략”

1. 설계용역 평가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용역 평가를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평가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해당 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양군 다과에서는 “영양군 □□□ □□□□□ 건립공사”의 설계용역비가 ○○○백만원으로 설계용역 평가 대상임에도 설계용역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설계의 품질, 공기 및 비용관리, 과업 이행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유사 공공건축물 발주 시 본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

여 설계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법」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2.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미승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101조의2 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 □□□□□ 건립공사”와 “△△△ △△△△△△ 건립공사”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대하여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양군 다과에서는 “영양군 □□□ □□□□□ 건립공사”와 같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외부 용역업체 검토를 의뢰하여 ‘적정’ 판정을 회신받고도, 발주청 명의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 △△△△△△ 건립공사”와 같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고, 품질시험계획 승인 여부 및 승인 내용에 대한 서면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 승인 없이 진행되었고,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3. 추락 및 낙하물 등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¹⁾, 수직보호망²⁾ 또는 방호선반³⁾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 시공된 수직보호망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현장 정리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영양군 다과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안전헬스 설치 부적정, 연약지반 비계 기초보강 부적정, 고소부 돌출철근 보호조치 및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등의 낙하물 방지조치 부적정, 폐파일 전도방지 조치 부적정, 현장정리 부적정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1)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2)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3)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 사용하여 비계내측 외측,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그림 1] 영양군 건축공사 안전관련 부적정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평가 이행, 품질시험계획·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 및 현장 내 안전시설 등 정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고, BBB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